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1년 11월 23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24일

3. 제안이유

○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정원의 총수 (안 제2조)

- 총 정 원 : 4,672명 → 4,700명 (+28명)

- 집행기관의 정원 : 1,809명 → 1,821명 (+12명)

- 소방공무원 정원 : 2,728명(변동 없음)

- 교육공무원 정원 : 43명(변동 없음)

- 의회사무처 정원 : 76명 → 89명 (+13명)

-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: 16명 → 19명 (+3명)

-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(안 별표 2)
 - 6급 : 35% 이내 → 35.5% 이내
 - 8급·9급 : 4.5% 이상 → 4% 이상
-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(안 별표 3)
 - 일반직 : 1,657명 → 1,684명 (+27명)
 - ▶ 5급 이하 (+28명), 전문경력관(△1명)
 - 연구직 : 199명 (변동없음)
 - ▶ 연구관 (△1명), 연구사 (+1명)
 - 지도직 : 30명 → 31명 (+1명)
 - ▶ 지도사 (+1명)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도의회(인사권독립, 정책지원관) 증원과 집행부의 팀 신설(이차전지산업팀, 공공건축팀, 산림바이오센터) 및 증원(자치경찰위원회 등)에 따라 정원이 증가하였으며,
- '21년 조직진단결과와 국내외 여건변화 및 정부조직개편(안) 등을 반영하였고, 과 증설 없는 부서 기능 재배치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